

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23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」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요건 강화 (안 제4조)
-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 보완 및 심사 절차 강화 (안 제11조)
- 위법, 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의무화 (안 제12조)
- 동행 직원 보호 및 부당 지시 금지 규정 신설 (안 제16조)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의회

- 전 화 : 043)740-3037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 대상 :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

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의장은 위원회에서 보고서 심의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별표의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출장의 필요성	1.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?		
	2.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?		
	3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?		
	4.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?		
지방의정과의 관련성	1.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?		
	2.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?		
	3.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?		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?		
	2.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		
	3.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?		
	4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?		
	5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?		
	6.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?		
출장자의 적합성	1.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?		
	2. 출장자 중 징계·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?		
	3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?		
	4.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?		
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	1.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?		
	2.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 등을 감안,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?		
	3.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?		
출장경비의 적정성	1.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2.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	3.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?		
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	1.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?		
	2.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?		

※ '아니오'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· ② (생 략)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<u>위촉한다</u>. 다만, 의원은 2명 이하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11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략) 3. <u>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</u></p>	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위촉하되,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</u> 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,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11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확하는 경우

4. (생략)

5.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② (생략)

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4. 제5항-----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공개 등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공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의장은 위원회에서 보고서 심의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